
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4.

발 의 자 : 조인철 · 박희승 · 어기구
민형배 · 박용갑 · 박수현
김우영 · 정준호 · 허성무
김동아 · 양부남 · 서천호
정진욱 · 안도걸 · 조정식
이정문 · 서삼석 의원
(17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그간 연구개발(R&D)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,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·사업화·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·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.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(출연연) 및 4대 과학기술원(과기원)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, 연구성과의 활용·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. 그러나, 2022년 5월 시행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
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관리 의무,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.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,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.

이에 출연연 및 과기원 등에 대하여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,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·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,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·지분 또는 자본금을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·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(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).
- 나.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및 임직원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·조언·자문 및 직무 관련 지식·정보 제공 등 외부활동이 허

용될 수 있음(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).
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)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교원 및 연구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·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·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③ 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(이하 “창업기업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소속 교원·임직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

1.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·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2. 창업기업등에 과학기술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3.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) (생 략)	제11조의2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 원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 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)이 공공기술을 활용하 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교원 및 연구원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해당 기업의 주식·지분 또 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「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 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·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 전받거나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(이하 “창업기업 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소속 교원·임직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

	<u>1.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</u> <u>·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</u> <u>받는 행위</u> <u>2. 창업기업등에 과학기술원의</u> <u>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</u> <u>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</u> <u>행위</u> <u>3.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</u> <u>는 행위</u>
--	--